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지위

박 노 형
(고려대학교)

목 차

I. 序 論	35
II.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45
III. WTO규범과 전자상거래	45
IV. 結 論	59

I. 序 論

최근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사업수단으로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매체의 성장은 국내 및 국제 정책분야에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1998년 미국이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를 제안한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WTO 회원국들의 결정¹⁾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논의의 기본이 된다.

이하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WTO에서의 논의를 살펴본 다음,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의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이후에서는 WTO 규범에서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논의를 GATS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WTO 규범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II.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1. 전자상거래의 정의

전자상거래에 WTO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전자상거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정의에 따라 상품무역으로서 GATT 규범이 적용될 수 있고, 또는 서비스무역으로서 GATS 규범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WTO법의 적용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확한

* 본 논문의 자료준비를 맡은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권현호 연구원 (박사과정)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1) Declaration: "The Geneva Ministerial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Ministerial Conference: Second Session Geneva, 18 and 20 May 1998, WT/MIN(98)/DEC/2. 1998.5.25.

정의가 합의되지는 못하고 있다.

1998년 5월 Geneva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전자상거래에 관한 Geneva 각료선언'²⁾에 따른 WTO 일반이사회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계획 (work programme)³⁾에서 전자상거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전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⁴⁾ 이러한 WTO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 상품은 물론 서비스의 생산·판매와 이들의 유통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전자상거래가 단지 새로운 거래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혹은 새로운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⁵⁾

2.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WTO의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은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를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 (이하 'TRIPS이사회'라 함) 및 무역개발위원회별로 각각 수행하여 그 결과를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⁶⁾ 이하에서는 관련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쟁점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상품무역이사회

가. 전자적 전송의 법적 성격

상품무역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전자적 전송 (electronic

2) *Id.*

3)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O, WT/L/274, 1998.9.30.

4) *Id.*, para 1.3.

5)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CALS/EC)협회, 전자상거래백서 2000. 2000.6., p.28.

6) 동 작업계획에 따라, 각 이사회는 논의의 결과를 1999년 7월 30일까지 그때까지의 논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WTO 회원국은 관련 이사회가 일반이사회에 작업계획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1999년 7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련 제안을 하였고, 이러한 제안은 동년 11월 30일 개최된 Seattle 제3차 각료회의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동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의 통일적 입장을 정리하는데 실패하였고, 일반이사회는 2000년 7월 4일 비공식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문제를 검토하던 4개 기관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7월 17일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동 제안이 채택되었다.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통상법제브리핑, 73·74호, p. 27.

transmission)의 법적 성격으로서, 전자적 전송이 서비스인지, 상품인지 아니면 제3의 유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관세, 상품의 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및 수입허가 등의 관련 분야에서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었다.⁷⁾

일부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상품을 GATT상의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라도 GATT규범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을 표시하였다.⁸⁾ 또한 다른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을 통한 데이터의 대량유통 (mass distribution of data)이 GATT의 적용을 받지만, 보다 개별화된 유통 (personalized distribution)은 GATS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⁹⁾ 한편 또다른 회원국은 데이터를 다운받는 경우 이를 수입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¹⁰⁾

나. 시장접근

동 사안의 핵심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제거래가 회원국들의 기존 관세양허표상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데 있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가 기존 관세양허표상의 의무이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즉, 동 사안은 무역촉진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며, 기존 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회원국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 무역이라 하더라도 회원국의 양허에 따른 의무를 변경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¹¹⁾

다. 관세 및 기타 부과금

한편 관세 및 기타 부과금에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1998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료선언은 전자적 전송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하여 잠정적인 동결조치 (standstill)를 규정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즉, 회원국들은 전자적 수단에 의해 구

7) WTO, G/C/W/158, 1999.7.26. para. 1.3.

8) *Id.*, paras. 2.3-2.5.

9) *Id.*, para. 2.7.

10) 즉, 관세는 국가간 상거래에 있어 그 상품이 자국의 영토로 들어올 때 부과되는데,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상품이 국경을 통해 실제로 넘어온 것인지, 즉, GATT II조에 따른 '수입' (importation)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Id.*, para. 2.9.

11) WTO, *supra* note 7, para. 3.1.

매되었으나 물리적 방법으로 국경을 넘어 전달되는 상품은 기존의 WTO 양허나 규정에 구속된다는데 전반적으로 합의를 이룬 듯이 보인다.¹²⁾

라. 기타

상품분류 문제에 있어서는 HS분류체제가 전자적 전송물을 분류하는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제기되었고, 관세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운반매체가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상품이라기 보다는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아 GATS 이사회의 관할로 넘기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³⁾ 특히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현 상황에서 아직 전자적 전송을 완전히 서비스로 간주하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전자적 전송이 상품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WTO 관세평가협정의 적용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¹⁴⁾ 그밖에 상품무역이사회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의 문제, 수입허가절차 등에 대하여도 논의를 하였다.¹⁵⁾

마. 최근의 동향

2000년 7월 17일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상품무역이사회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였다. 이에 따라 동 이사회는 2000년 10월 4일과 11월 8일 두 차례의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동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관세평가협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평가문제, 수입허가절차협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 GATT1994 II조에 따라 정의된 관세, 기타 세금 및 부과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표준, 원산지규정, 분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¹⁶⁾

(2) 서비스무역이사회

가.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과 관련한 GATS의 범위

12) *Id.*, paras. 4.2-4.3.

13) *Id.*, paras. 5.1, 6.3.

14) *Id.*, para. 6.4.

15) *Id.*, para. 11.1

16) WTO, G/L/421, 2000.11.24. para. 3.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은 GATS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GATS는 전달되는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고, 전자적 전송은 GATS에 규정된 서비스 공급의 4가지 유형¹⁷⁾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따라서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GATS I조의 의미에 따른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GATS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동 사안은 복잡한 성질의 것이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⁹⁾ 또한 서비스가 GATS에 규정된 공급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전자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의하였다.²⁰⁾

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적인 GATS 규정이 전자적 수단을 통한 서비스의 공급에 적용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²¹⁾ 최혜국대우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는 서비스가 '동종서비스' (like service)로 고려되는지 여부가 주된 문제라고 언급하였다.²²⁾ 한편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내국민대우 규정이 전자적 수단을 통한 서비스 공급에 적용된다는 사실에 일반적으로 동의하였다.²³⁾

다. 투명성

서비스무역이 회원국의 규제제도의 변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GATS는 투명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무역이사회는 투명성이 전자상거래 분야에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주로 논의하였다. 투명성에 관한 GATS III조의 의무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과 규칙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²⁴⁾

17) GATS I:2조. 서비스 공급의 4가지 유형은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및 자연인의 이동이다.

18) WTO, S/L/74, 1999.7.27, para. 4.

19) *Id.*

20) *Id.*, para. 5.

21) *Id.*, para. 7.

22) *Id.*, para. 8.

23) *Id.*, para. 17.

24) *Id.*, para. 9.

라.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에 의한 시장접근

서비스의 동종성 문제와 관계없이 전달수단은 구체적인 약속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회원국들은 달리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서비스의 전자적인 공급은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⁵⁾

마. 관세

회원국들은 관세의 개념이 GATS에서 이질적인 것이고, 단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이 존재하는 범위에서만 적절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동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두 가지 문제, 즉 어떻게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관세를 전자적인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²⁶⁾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관세 문제에 있어 일부 회원국은 관세에 대한 현행 동결조치의 영구화를 지지하였다. 반면 일부 대표들은 분류 (classification)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결조치의 연장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회원국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다.²⁷⁾

바. 서비스 분류의 문제

회원국들은 모든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공급되건 아니건간에 관계없이 GATS의 범주에 포함되며, GATS는 전자적으로나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 사이에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상품 중 절대 다수가 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하였다.²⁸⁾ 반면 일부 회원국들은 상품으로 분류되어 GATS보다는 GATT 규범에 종속되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상품에 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범주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25) *Id.*, para 15.

26) *Id.*, para. 22.

27) *Id.*, para. 23.

28) *Id.*, para. 24.

회원국들은 동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²⁹⁾

사. 기타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참여 증대, 국내규제·표준 및 인정, 경쟁, 개인정보 보호·공중도덕·사기방지, 통신부속서 등의 부문에 대하여도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 최근의 동향

2000년 7월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무역이사회는 동년 10월 6일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대한 부문별 논의를 계속하였다. 동 회의에서 서비스무역이사회가 1999년 일반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여전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회원국 견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 이 때 논의된 바를 다시 재개하거나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³⁰⁾

(3)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

가. 일반적인 문제

TRIPS이사회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관련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활동과 연계되어 WTO에서의 논의는 그다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이사회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일반적으로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무역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위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의 창설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³¹⁾

그러나 기술적 중립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위한 전세계

29) *Id.*, para. 25.

30) WTO, S/C/13, 2000.12.6.

31) WTO, IP/C/18, 1999.7.30, para. 4.

적인 디지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이전에 협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디지털 네트워크의 세계적인 속성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쟁점에 대하여 다자간에 합의된 접근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결국 어떤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이 올바른 권리 보유자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부의 행동이 요구되는 것은 어떤 수준까지인지 등에 대한 문제에 보다 추가적인 작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³²⁾

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TRIPS이사회는 WIPO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이미 완료된 작업에 주목하였다. 특히 동 이사회는 1996년 12월 채택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두 개의 조약인 'WIPO저작권조약' (WCT)³³⁾과 'WIPO실연및음반조약' (WPPT)³⁴⁾을 주목하였다. 또한 동 이사회는 현재 전자적 관리체계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청각실연, 데이터베이스 및 방송기관의 권리 등의 보호에 관한 WIPO의 작업에 대하여 주목하였다.³⁵⁾

다. 상표의 보호

전자상거래와 상표권의 문제에 대하여 TRIPS이사회는 특정 상표를 연상시킬 수 있는 도메인이름의 무단선점 (cybersquatting)을 주로 다루었다. 동 이사회는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보호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동 이사회는 주지상표 (well-known mark)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상표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쟁점에 관하여 지리적표시와 산업디자인 및 상표법에 관한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에서의 WIPO 작업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였다.³⁶⁾

32) *Id.*

33) 'WIPO Copyright Treaty', 1996.12.20. WIPO CRNR/DC/94, 1996.12.23.

34)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 Treaty', 1996.12.20. WIPO CRNR/DC/95, 1996.12.23.

35) WTO, *supra* note 31, para. 6.

36) *Id.*, para. 7.

라. 기타

TRIPS이사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 문제, 지적재산권의 집행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의 신규성과 복잡성으로 향후 국제공동체가 동 쟁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상당 부분의 작업이 WIPO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음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동 이사회는 WIPO의 향후 추가적인 작업을 포함하여 WTO가 동 분야에서의 발전을 계속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³⁷⁾

마. 최근의 동향

2000년 7월 일반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TRIPS이사회는 9월 21-22일 및 11월 27-30일 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쟁점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즉, 회원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지적재산권 기술 및 행정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이점 및 기회; 개발도상국에서 지적재산권의 이익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있어서 디지털 및 통신기술의 사용;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이용의 종류; TRIPS협정과 WCT 및 WPPT의 관계; WIPO에서 수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포함하여 상표 및 주지상표 (well-known trademarks)에 대한 논의; 상표, 지리적 표시 기타와 관련하여 WIPO 인터넷도메인이름의 합의; 소프트웨어 및 사업수단에 관하여 디지털환경에서의 특허 사용; 디지털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잠재적인 반경쟁적 사용;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한 도전; 그리고 디지털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적재산 침해의 측면에서 TRIPS협정 제 69조에 따른 국제적 협력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³⁸⁾

(4) 무역개발위원회

37) *Id.*, para. 12.

38) WTO, IP/C/20, 2000.12.4

가. 전자상거래와 다자간 무역체제

무역개발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TDC)에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가 다자간 무역체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회원국들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지적재산권, 관세평가, 기술표준과 기타 규제의 적용 및 GATT XX조의 예외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즉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WTO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연계 및 보다 조화된 접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이러한 견해가 일반이사회가 개발의 측면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쟁점을 충분히 다룰 때까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³⁹⁾

한편, 많은 회원국들은 급속한 추세의 기술발전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개도국들의 능력이 이러한 추세와 기술적 역동성에 미치지 못함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개도국들이 어떻게 전자상거래로부터 효과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였다.⁴⁰⁾

나. 개발도상국의 관점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발전이 사업거래와 무역이 수행되는 방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발전이라는 관점을 전자상거래에 관한 어떤 논의에 있어서도 선결조건으로 보았다. 즉, 개도국들은 모든 무역 문제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가 경제활동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세계 경제의 균형잡힌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⁴¹⁾ 그러나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개도국들의 참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는 많은 개도국들의 능력 밖에서 머물게 될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⁴²⁾

39) WTO, WT/COMTD/19, 1999.7.15, para. 2.

40) *Id.*, para. 4.

41) *Id.*, para. 5.

42) *Id.*, para. 6.

다.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문제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들이 직면한 다수의 문제 즉, 통신시설, 정보기술, 금융 및 재정적 자원 등을 포함하는 인적·물적 기반에서의 열악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회원국은 이러한 인프라의 요구는 국내 및 해외 민간투자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다른 회원국들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참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 및 개발지원기금(development assistance funds)이 민간부문의 참여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⁴³⁾

라. 최근의 논의동향

2000년 7월 일반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무역개발위원회는 2000년 10월 22일 및 27일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2000년 10월 25일 UNCTAD, ITU, ITC, WIPO의 대표가 참여한 비 공식회의를 통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WTO회원국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이니셔티브가 강조되었다. 동 위원회는 전자상거래의 빠른 발전 속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러한 관련성을 가지고 2001년 봄 전자상거래에 관한 두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⁴⁴⁾

Ⅲ. WTO규범과 전자상거래

현재 모든 거래에 걸쳐 적용되는 통일된 다자규범이 없기 때문에 WTO의 제도적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의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

1. 전자상거래의 대상

43) *Id.*, paras. 10-11.

44) WTO, WT/COMTD/26, 2000.11.13

전자적 전송을 통한 배달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상품에서 가능하다. 첫째, 전통적으로 상품으로서 전달되던 상품이 디지털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은 기본적으로 미디어상품으로서 영화, 다양한 형태의 인쇄물, 비디오 게임, 테이프나 CD와 같은 운반매체에 담긴 기록된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전자적 수단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 금융, 법률, 통신 등으로서 본질적으로 서비스이다.

전자적으로 전달된 서비스가 GATS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⁴⁵⁾ 그러나 전자적으로 전달된 미디어상품이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이 남아 있다. 즉, 동 상품의 무형적 특성상 GATS 규범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지만, 달리 동 상품에 대한 실물 상품이 GATT1994의 규범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디어상품 역시 GATT1994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되기 때문이다.⁴⁶⁾

(1) 디지털 상품무역

디지털화가 가능한 미디어상품의 1996년 무역액은 약 440억 달러로서 전체 세계 무역액의 1%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다. 한편 인쇄물과 기록된 테이프, CD 등은 전체 미디어상품 무역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미디어상품의 1990~1996년 연평균 무역증가율은 약 10%로서 전체 상품무역 증가율의

45) 이러한 견해는 WTO의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즉, 다수의 회원국들은 GATS는 전달되는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고, 전자적인 전송은 GATS에 규정된 4가지 서비스 공급의 유형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GATS I조의 의미에 따른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고, 결국 GATS 의무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WTO, *supra* note 18, para. 4.

46) 이 점에 대하여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따른 상품무역이사회에서의 논의에서도 의견이 대립하였다. 즉, 일부 대표들은 디지털화 된 콘텐츠가 상품으로 특징될 수 있어도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데 GATT의 범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편 일부 대표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데이터의 대량유통 (mass distribution of data)은 GATT의 원칙에 따른 적용을 받지만, 보다 개별화된 유통 (personalized distribution)은 GATS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WTO, *supra* note 7, para 2.7.

47) 이하 통계는 Peres-Esteve and Schuknecht (1999) based on COMTRADE,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UNSD); Aaditya Mattoo and Lidger Schuknecht, 'The Policies for Electronic Commer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000.6. p. 23 참조.

1.5배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CD와 같은 기록매체의 증가율이 훨씬 높다. 국별로는 EU의 무역액이 약 200억 달러로 세계 미디어상품무역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디어상품의 무역액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디지털화가 가능한 미디어상품 (디지털상품)의 무역은 현재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비중이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이다. 네트워크를 통한 무역은 운송비 및 관리비를 상당히 절감시키고, 많은 상품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소매비용은 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또는 카탈로그를 통한 우편 주문의 경우 상품을 발송하는데 드는 운송비 및 관리비가 당해 상품 가격보다도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이 인터넷을 통해 전송이 가능할 경우 상품 가격은 상당히 하락할 것이며, 이러한 상품의 전자무역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동분야에서 10%의 연평균 무역증가율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만약 무역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한다면 2004년에는 무역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⁴⁸⁾

(2) 전자적 서비스무역

전자적 전달은 이미 많은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금융서비스, 및 기타 사업서비스는 흔히 통신망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해서 수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서비스무역은 대부분 전자적 형태 (electronic form)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분야에서의 국제무역은 1995년 약 3,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전체 서비스무역의 30%, 또는 전체 무역의 6%를 차지하며, 디지털상품의 무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부문인 '기타 사업서비스'⁴⁹⁾의 무역 가치는 2,600억 달러 이상이며, 통신 및 금융 서비

48) 이러한 디지털상품의 무역 이외에 일반적인 범위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의 확대를 감안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세계무역은 더욱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Forrester Research는 2000년 4월 2004년의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6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Forrester Research, Press Release, 2000.4.19

스 무역액도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분야의 주요 무역국으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개도국을 들 수 있다.

한편 통신비가 계속 하락하고 인터넷에 기반을 둔 무역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서비스무역에서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음성, 데이터, 이미지 전송 등과 같은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전자적 매체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 역시 전송 비용을 감축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화선에 비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은 통신망을 통하여 수행된 기존의 서비스무역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단지 실물 형태로만 거래되었던 서비스 및 새로운 서비스 무역을 촉진시킬 것이다.⁵⁰⁾

2.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WTO에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에 대한 무관세화는 1998년 2월 6일 미국이 일반이사회에 제안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⁵¹⁾ 즉 미국은 현재 WTO 회원국들이 전자거래를 관세 목적을 위한 수입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동시에 전자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주목하고, 전자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⁵²⁾ 그러나 당시 WTO 회원국들은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캐나다는 1999년 제3차 각료회의까지 전자거래에 대한 관세부과의 효과가 있는 신규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시한부 동결선언'을 제안하였다.⁵³⁾ 결국 1998년 5월 20일 WTO는 '세계전자상거래에 관한 Geneva 각료선언'을 통하

49) '기타 사업서비스'는 Uruguay Round 서비스분야 최종 양허업종 분류에 따른 15개 업종을 포함한다. 동 서비스에는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사업관리, 과학기술 자문, 국제회의 용역, 장비유지 및 포장 인쇄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정부, 『UR/서비스양허표(안)』, 1993.12.

50) 이러한 예로 주식거래, 데이터베이스의 자동적인 다운로드, 대학교육과정 및 의료진단 등을 들 수 있다.

51) WTO, WT/GC/W/78, 1998.2.9.

52) *Id.*

53) WTO, WT/GC/W/82, 1998.4.15.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Members agree to apply no new measure that would result in the application of customs duties to electronic deliverables. Members will reassess the standstill after 1 January 2000...."

여 전자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고 선언하였다.⁵⁴⁾ 동 선언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국가 관행을 단순히 연장하는 합의에 불과하다. 이러한 합의는 일시적이며 정치적이지만 이러한 합의를 영속적이며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하자는 제안도 있다.⁵⁵⁾

1998년 5월 WTO의 선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동 결정은 오직 전자적 전송 (electronic transmissions)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주문되어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상품은 적용대상이 아니다.⁵⁶⁾ 모든 형태의 상품이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광고되고 구매될 수 있다. 그러나, 무관세화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해당 상품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디지털화 된 상품일 것을 요구한다.⁵⁷⁾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는 전자적 전달이라는 한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는 계속 관세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특혜무역협정과 유사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는 특혜무역협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모두를 가지고 있다. 수입국의 무역전환으로 인한 국부의 감소(welfare cost)는 무관세로 인해 포기된 관세수입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실물 무역이 전자적 채널로 전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관세수입의 감소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⁵⁸⁾

둘째, 동 선언은 오직 관세 (customs duties)만의 부과금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른 형태의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만약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모든 상품을 GATT의 적용을 받는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GATT는 다른

54) WTO, *supra* note 1.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Members will continue their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55) 1999년 Seattle 제3차 각료회의에서 호주와 EU 및 미국 등은 전자상거래의 계속되는 무관세 대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Aaditya Mattoo and Lidger Schuknecht, *supra* note 47, p. 3.

56) 이러한 점은 전자상거래의 정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현재 전자상거래에 대한 단일 정의는 없다. 다만,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다음 세 가지 단계, 즉 광고나 정보를 탐색하는 구매전단계 (pre-purchase stage), 주문과 지불을 포함하는 구매단계 (purchase stage), 그리고 전달단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WTO에서는 단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의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다.

57) 이러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서적,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58) Aaditya Mattoo and Lidger Schuknecht, *supra* note 47, p. 4.

무역제한적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적으로 전달 가능한 상품의 대부분은 실제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명백히 GATS의 규율대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향후 WTO체제에서의 전자거래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⁵⁹⁾

예를 들면, GATS는 쿼터를 부과하지 않는다든지 등과 같은 시장접근과 외국 서비스 및 공급업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든지 등과 같은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약속을 할 것인지 여부를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⁶⁰⁾ 그러나 선진국이건 개도국을 불문하고 많은 국가들은 전자적 전달이 실현 가능한 많은 서비스분야에 대해 이러한 비차별 및 시장개방의 약속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있어 무관세 대우의 결정은 각 회원국이 여전히 차별적인 내국세를 유지하거나 쿼터를 유지하는 관행을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상품 및 서비스무역에 대한 WTO 규범의 차이점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GATT의 법적 체제와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GATS의 법적 체제에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특히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의 차이가 중요하다.

(1) 내국민대우

WTO 회원국이 외국상품을 국내상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여야 할 의무이다. 내국민대우는 GATT에서는 내국민대우가 일반적 의무이고, 이는 내국세

59) 전자적 전송의 문제를 서비스무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품무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는 GATS는 서비스의 공급수단을 구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기술중립적이라고 보아 일부 의견을 제외하곤 GATS 규범이 전자적인 전송에 적용된다고 파악한다. (WTO, S/L/74, 1999.7.27, paras. 4-5) 상품무역이사회는 전자적 전송의 유형에 대한 법적 성격을 미리 파악하여 어떤 경우에 서비스, 상품 또는 제3의 유형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TO, WTO, G/C/W/158, 1999.7.26, para. 1.3).

60) 수량제한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내국민대우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GATT와는 달리 GATS는 분야별 구체적약속에 따라 내국민대우의 의무를 부담하고, 시장접근에 관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및 국내 규정과 같은 국내 조치 (internal measures)에 적용되고 관세와 같은 국경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⁶¹⁾ 이에 비해 GATS에서는 내국민대우가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만, 이것이 일반적 의무는 아니다.⁶²⁾ GATS의 내국민대우는 회원국이 명시적으로 양허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실제로 회원국들의 많은 제한이 존재한다.

(2) 관세

GATT에서는 회원국이 자국의 관세율을 무관세(tariffs at zero)로 양허하지 않을 경우 수입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상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GATS에서는 회원국의 조세제도가 내국민대우 약속과 일치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관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쿼터

GATT는 특정한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⁶³⁾ 이에 비해 GATS에서 수량제한은 회원국이 제한 없는 시장접근의 제공을 약속한 분야에서만 금지된다. 이상의 차이점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1) GATT1994 III조.

62) GATS XVII조.

63) GATT1994 XI조.

<표 1>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WTO

핵심규범의 비교

	내국민대우	관세	쿼터
GA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의무 - 원칙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국내조치에만 적용 	회원국이 관세를 무관세로 하지 않는 경우 허용됨.	일부 특정 긴급상황을 제외하곤 허용되지 않음.
G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의무가 아님 - 회원국이 명시적으로 양허한 서비스 부문에만 적용 -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 	서비스무역의 성격상 국경조치로서 의미가 없음.	회원국이 제한 없는 시장접근을 부여하기로 약속하지 않는다면 허용됨.

(4) WTO규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

특정 상품에 대한 WTO에서의 대우는 동 상품이 어떻게 분류되느냐, 즉,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그 대우가 달라지게 된다. 즉, GATT의 적용을 받는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량제한이 부과되지 않고, 또는 내국세 및 국내 규정을 통한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전자적으로 전달된 미디어 상품이 상품으로 분류된다면, 무관세 대우의 결정은 사실상 완전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것이다.

GATT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무역은 회원국이 행한 구체적 약속에 주로 의존한다. 특히 서비스무역에서 관세는 그 속성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으로서 전자거래에 대한 관세부과의 금지는 의미가 없다. 관세를 조세의 일부로서 고려한다면, 회원국이 특정 분야에서 내국민대우를 제공할 약속을 한 경우, 관세를 포함한 모든 차별적 조세는 이미 금지된다. 만약 회원국이 내국민대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경우 관세 이외의 차별적 내국세 부과

는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좀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서비스무역으로서 전자거래에 대한 관세부과를 금지하는 것은 회원국이 쿼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GATS에서 허용되는 쿼터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무관세 대우는 전자거래의 당해 상품이 GATT상의 상품으로서 취급된다면 미래의 무역은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서비스무역의 경우에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된다.

4. 전자상거래 관련 WTO 규범의 심화: GATS 규범의 명료화 및 강화의 필요성

전자거래의 대부분이 서비스무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궁극적으로 GAT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상품무역이 사회 다수의 회원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위임된 전자상거래 대부분의 측면에 대하여 전자적 전송이 어떤 경우에 서비스, 상품 또는 제3의 유형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⁶⁴⁾ 현재까지의 WTO에서의 논의 동향으로 미루어 대부분의 전자상거래는 서비스무역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하겠다.⁶⁵⁾ 자유로운 전자상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GATS의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대해 충분한 자유화 약속을 합의하는 것이다.⁶⁶⁾ 여기에서 주된 관심사항은 사업서비스, 오락 및 금융서비스와 같이 실제 전자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이다.⁶⁷⁾

64) WTO, *supra* note 7, paras. 2.6-2.7, 5.4 등 참조.

65) 물론 이와는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즉, 일부 회원국 대표들은 모든 전자적 전달물은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몇몇 회원국 대표들은 이를 상품으로 분류하여 GATS보다는 GATT에 종속되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일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상품에 대하여 새로운 범주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WTO, *supra* note 18, para. 25.

66) 여기에서 시장접근은 수량제한을 배제하는 것으로, 내국민대우는 모든 형태의 차별적인 과세를 제거하는 것이다.

67)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서비스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속성상 쉽게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없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는 서비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건설서비스, 오수 및 쓰레기 처리와 같은 환경서비스, 호텔이나 음식점의 서비스, 및 운송서비스 등과 같은 경우에도 건축디자인, 호텔예약 등 이러한 서비스의 일부 보조서비스가 점차 전

서로 다른 서비스분야 및 공급 유형에 대한 약속 수준을 검토함에 있어, GATS의 자유화 약속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제한 없는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완전한' 자유화 약속이다. 이것은 양허표상의 특정 공급 형태에 대한 어떠한 진입장벽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진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한에 의한 조건이 주어진 '부분적인' 약속이다. 셋째는 관련 유형에 대하여 시장진입에 '양허하지 않음' (unbound)으로 표시되고 시장접근에 대한 보장이 제공되지 않는 '약속 없음' (no commitment)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GATS에 따라 규율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체적인 약속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GATS에서 약속을 증가시키는 것이 전자상거래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로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와 동시에 GATS의 특정 규정을 명료화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1) 기술적 중립성

GATS에서 기술적 중립성 (Technological neutrality)의 원칙을 확보하는 것은 동 협정의 규범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⁶⁸⁾ 기술적 중립성이란 회원국들이 전달수단에 근거하여 상품간에 정책적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⁶⁹⁾

만약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GATS의 핵심규범인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같은 규정을 전자적 전달에 적용하는 것이 의문시된다. 첫째, GATS의 시장접근 규정은 명백하게 구체화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허된 분야에 있어서 특정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서비스의 전자적 전달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

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의 어려움이 있다.

68) WTO 회원국들은 동 원칙을 확립하는데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계획에 따라 일반이사회에 제출한 잠정보고서 (Interim Report)에는 공동의 이해에 관한 사안으로 서비스협정의 기술적 중립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WTO, S/C/8, 1999.3.31, para. 4.

69) Aaditya Mattoo and Lidger Schuknecht, *supra* note 47, p. 15.

이 있다면, 서비스의 총액 또는 총량에 대한 쿼터 정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약속이 공급자에게 기술적 전달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한은 시장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배제하는 것이 된다.

둘째,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규범을 적용하는데 있어 동종성 (likeness)의 개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회원국이 전자적 전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편 전달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 법률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을 허용했을 경우를 가정한다. 다른 운반수단을 통해 전달된 동종상품이 법적 의미에서 동종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체제는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조항이 전자상거래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은 운송된 수단에 상관없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기술적 중립성에 관한 명백한 합의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추정될 수 있는 것인가? 기술적 중립성에 관한 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추정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 협정을 필요로 한다.⁷⁰⁾

첫째, GATS에 따른 서비스의 분류는 종종 기술 중립적이지 않다. 즉, 동 정의는 전자적 수단에 대한 언급 없이 전달의 수단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기본통신협상에서는 이러한 정의의 개념에 대한 의구심을 극복하고 양허된 약속의 범위를 명료화하기 위해 중립성 원칙에 관한 명백한 이해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기본통신서비스의 개념은 문제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는 가정을 설정하고 있다.⁷¹⁾ 예를 들면 음성전화통신에 대한 약속은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유선 (wire-based) 뿐만 아니라 무선 (radio-based) 기술도 포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소 모순되게도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결정 그 자체는 기술적 중립성의 개념을 손상시킨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전자적 전달과 다른 수단을 통한 전달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상품의 '동종성'이 전달수단의 동일함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70) *Id.*, p. 16.

71) *Id.*

(2) 전자적으로 전달된 상품의 분류

모든 서비스가 GATS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해도 여전히 두 가지의 분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첫째 문제는 서비스가 어떻게 정의되는가와 관련된다. 특히 모든 무형물, 예를 들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미디어상품의 무역이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그렇다면 회원국들이 인터넷으로 전달된 서적 및 음반과 같은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유화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분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⁷²⁾

두 번째 분류의 문제는 약속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새로이 등장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예로는 'home-ticketing', 즉 운송 또는 오락 티켓의 예약 및 텔레프린팅을 들 수 있다. 상품 정의에 관한 GATS의 접근방법이 긍정적목록방식 (positive listing)에 기초하는 경우, 서비스 활동의 대부분에 존재하는 '기타' (other) 범주가 적법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이 이러한 측면에 대해 자유화 약속을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의 범위를 명료화 할 필요성이 있다.⁷³⁾

(3) 공급유형간의 구별

GATS는 서비스 공급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 영토내로의 서비스공급, 둘째 한 회원국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공급, 셋째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넷째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이다.⁷⁴⁾ 국경을 넘어 전자적으로 전달된 서비스가 GATS에서

72)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단순한 접근방법은 모든 전자적으로 가능한 미디어상품에 대해 단일 범주 (category)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WTO, *supra* note 7, para. 5.4 참조.

73) Aaditya Mattoo and Lidger Schuknecht, *supra* note 47, p.17.

74) GATS I:2조.

제1의 유형, 즉, 국경간 (cross-border) 공급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제2의 유형인 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의 범주에 속하는지의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⁷⁵⁾

이러한 두 유형 사이에서의 구분은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첫째, 두 가지 유형에 대해 회원국들에 의한 약속의 수준이 종종 서로 다르며, 흔히 첫 번째 유형보다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다.⁷⁶⁾ 따라서 첫 번째 유형에서 전자적 전달의 분류는 이것이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될 경우에 비해 덜 개방적인 무역체제인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서비스 공급유형의 구분은 거래가 발생한 곳으로 간주되는 규제제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유형으로서의 분류는 거래가 소비자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자 국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 유형으로서의 분류는 서비스 생산자의 영역 내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⁷⁷⁾

(4) 국내 규정에 대한 원칙의 강화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재의 장애요인 중에서 국내규정에 의한 장애는 관세 및 쿼터와 같은 명시적 장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나 합법적인 공공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정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무역에 대한 규제장벽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GATT 또는 GATS는 규제 목적 그 자체의 합법성에 관하여 공표한 적이 없다. 오히려 WTO의 초점은 동 규제가 차별 또는 보호의 대체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면서 규제 목적이 충족되는가에 있다.⁷⁸⁾

GATS는 두 개의 핵심조항이 국내규제 (domestic regulation)를 다루고 있다. 첫째, GATT XIV조는 회원국이 특수한 상황에서 GATS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GATT XX조의 일반적 예외조항과

75) Aaditya Mattoo and Lidger Schuknecht, *supra* note 47, p.17.

76) 예를 들어 만약 자본의 흐름이 첫 번째 유형을 통하여 서비스 전달의 필수적 부분이라면 GATS 규범은 국가에게 국경간 자본흐름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두 번째 유형에 대하여는 유사한 요구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특히 금융서비스에서 중요하다.

77) Aaditya Mattoo and Lidger Schuknecht, *supra* note 47, p.18.

78) *Id.*

유사하다. 동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예외 조치를 허용한다. 즉, 공중도덕의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공공질서의 유지⁷⁹⁾, 법률 및 규정의 준수 확보, 사기 및 기만 관행의 방지를 다루기 위한 것, 계약의 미준수, 프라이버시 및 비밀의 보호, 안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예외조치는 다음의 중요한 조건의 제한을 받는다. 즉, GATS XIV조는 당해 조치가 동일한 조건을 향유할 수 있는 국가들간의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가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XIV조는 프라이버시 보호,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물의 유포 금지, 및 사기를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법적 적용대상의 범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GATS의 일반적 예외조항이 대부분의 사항을 포괄하기 때문에 달리 국내 규정의 무역제한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는 GATS 규범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정보 문제에 기인한 시장의 실패는 규제적 간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규제에 대한 이러한 동기는 합법적이지만, 필요성과 보호주의 사이의 구별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둘째, GATS VI조는 규제의 적용에 관한 많은 원칙들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분야에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반적 적용조치'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⁸⁰⁾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⁸¹⁾ 그러나 GATS VI조는 특정 조치가 앞서 언급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좀 더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테스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VI조에 규정된 작업프로그램에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및 라이선스 요건과 관련된 조치들이 서비스 무역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필요한 원칙의 개발⁸²⁾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⁸³⁾

79)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GATS XIV조(a)의 주.

80) 예를 들어 국내 및 해외를 불문하고 모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라이선스 또는 자격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81) GATS VI:1조.

82) GATS VI:4조.

83) Aaditya Mattoo and Lidger Schuknecht, *supra* note 47, p.19.

IV. 結 論

전자상거래는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서비스무역과 디지털 상품의 무역을 촉진시킬 것이다. WTO에서의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선언은 개방적 무역 환경에 대한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지만, 동 선언의 중요성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동 선언의 유효성이 의심스러우며 동 선언은 무시될 수 없는 경제적 및 법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함의는 특정 전달형태에 대한 특혜대우가 다른 유형으로부터 무역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전환의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법적 함의는 전자거래의 특혜대우가 오직 전달수단에 근거하여 상품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GATS 규범 및 약속이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장벽 없는 전자상거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에서의 약속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GATS 규범을 명료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별첨I >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Work Program)

담당기관	주요 검토 대상규정
서비스무역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S I: 범위 및 공급방식 - GATS II: 최혜국대우 - GATS III: 투명성 - GATS IV: 개발도상국의 참여확대 - GATS VI, VII: 국내규제, 표준, 인정 - GATS VIII, IX: 경쟁정책 - GATS XIV: 개인정보 보호, 공중도덕 보호, 사기방지 - GATS XVII: 내국민대우 - 통신부속서 - 관세문제 - 서비스의 유형분류 문제
상품무역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상품에 관한 시장접근 문제 - 관세평가협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 수입허가절차협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 GATT1994 II조상의 관세 및 기타 과세에 관련된 문제 -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표준 문제 - 원산지규정 원칙에 관련된 문제 - 상품의 유형분류 문제
TRIPS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강화에 관한 문제 - 상표권의 보호와 강화에 관한 문제 - 신기술 관련 문제 및 기술에 대한 접근 확보 문제
무역개발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경제발전에 전자상거래가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기회확대를 중심으로) -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수단 및 장애사유: 기술이전, 자연인의 이동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확대의 역할 - 다자간무역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통합을 위한 정보기술의 이용 - 전자상거래가 개발도상국의 상품유통을 위한 전통적인 수단에 미치는 영향 -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재정적 의미

< 별첨II >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 일지

날짜	주요 논의 동향
1998.2.6	미국,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에 대한 규범이 필요함을 일반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안
1998.5.20	WTO 제2차 각료회의, '세계 전자상거래에 관한 Geneva 각료선언' 채택
1998.9.25	일반이사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작업계획 채택
1999.4.12	상품무역이사회,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따른 상품무역 관련 논의 동향을 일반이사회에 제출
1999.7.19	서비스무역이사회,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따른 서비스무역 관련 논의동향을 담은 진행보고서 채택
1999.7.30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논의동향을 담은 진행보고서를 일반이사회에 제출
1999.7.13	무역개발위원회,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따른 진행보고서 제출
1999.10.6	일반이사회, 작업계획 결과에 따른 제안
1999.11-12	WTO Seattle 각료회의에서 비공식회의로 논의
2000.7.17	일반이사회, 비공식회의에서 작업계획에 따른 4개 기관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
2000.11	무역개발위원회, 제네바 주간 (Geneva Week)에서 비공식회의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이사회 7월 결정에 따른 진행보고서 제출
2000.11	상품무역이사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이사회 7월 결정에 따른 진행보고서 제출
2000.12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이사회 7월 결정에 따른 진행보고서 제출
2000.12	서비스무역이사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이사회 7월 결정에 따른 진행보고서 제출 (구두보고)